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93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황운하 · 윤종오 · 백선희
김준형 · 전종덕 · 용혜인
서영석 · 박은정 · 정혜경
김재원 · 정춘생 · 신장식
한창민 · 서왕진 · 김선민
이해민 · 강경숙 · 차규근
최혁진 · 김승원 · 민병덕
민형배 · 김용민 · 부승찬
장경태 의원(25인)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연임 금지, 국회 권한 강화와 권력 분립 등 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겼지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참여가 제한되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며, 권력 분립 원칙이 미흡하게 작동하는 등 한계를 비판받아 왔음. 이는 1987년 개정 헌법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야 정치인 8인의 협상으로 불과 1개월 만에 합의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함.

이런 이유로 정치적 · 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헌법, 인구위기 · 기후위기 · 공동체 위기 등 현재와 미래의 위

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법, 변화된 사회적 소통 환경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법 등 헌법개정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헌법은 개정 절차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정당 간 합의가 불발되어 헌법 개정은 번번히 무산되어 왔음.

한편, 이번 세기 들어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민 참여 헌법개정에 성공한 국가들은, 개헌 전 국민 참여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개정 헌법에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음.

이에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국회가 헌법개정 일정을 스스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헌법개정 요구를 국회가 수용토록 하며, 국회가 국민에게 헌법개정을 약속하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의 확대·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헌법개정안 기초안”이란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논의를 위해 작성된 안으로서 국회의장에 송부되는 안을

말하며,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이란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위해 작성된 안으로서 국회의장에 송부되는 안을 말함(안 제2조).

다. 모든 국민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의 작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라.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에 관한 의견수렴과 기초안 작성을 위해 국회 소속으로 범국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두며,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5일 이내에 추진협회를 설치함(안 제4조).

마. 추진협의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쟁점별로 복수의 안을 기초안으로 작성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항).

바. 추진협의회는 헌법개정안 기초안이나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 중 일부 내용을 먼저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개정안 기초안이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 그 이후의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 논의는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사.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4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사람,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사람,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법학·정치학 등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사람, 국회 사무차장으로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정당 추천 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

아.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추진위원 중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인과 비교섭단체·시민단체·학계 추천 위원 중 2인을 국회의장이 위촉함(안 제6조제3항).

자. 국회의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이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위원이 국회의원을 상실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안 제8조).

차. 추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카. 국회는 이 법에 따른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헌법개정안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의 확대·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는 헌법개정의 의안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 기초안”이란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논의를 위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에 송부되는 안을 말한다.
3.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이란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위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에 송부되는 안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의 작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범국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헌법

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에 관한 의견수렴과 기초안 작성을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범국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 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5일 이내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제5조(추진협의회의 직무 및 운영) ①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여론조사 등 범국민적 의견수렴
3. 쟁점 토론, 공론조사, 지역순회 공청회 등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 주관
4.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 작성
5.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국회에 필요한 자문 제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협의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쟁점별로 복수의 안을 기초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헌법개정안 기초안과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은 추진협의회의 의

결로 확정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 기초안이나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 중 일부 내용을 먼저 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전단이나 후단에 따라 의결된 헌법개정안 기초안이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 그 이후의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 논의는 의결된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추진협의회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6조(추진협의회의 조직)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4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여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 수를 정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사람
 2. 제1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사람
 3.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 법학, 정치학 등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사람
 6. 국회 사무차장
-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 1인과 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의결을 주재하며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⑥ 추진협의회는 회의, 운영, 직무 추진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겸한다.

1. 추진협의회 위원장 4인

2. 국회 사무차장

3.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 1인

⑦ 추진협의회의 회의, 운영, 직무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추진협의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진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해임 및 해촉 규정) ① 국회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위원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결원은 보충하지 아니한다.

제9조(추진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행정·재정적 지원) ① 추진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회의장은 추진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추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헌법개정안 기초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헌법개정안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